



CP 뉴스 브리핑입니다



2014.07.30

[CP 사무국 뉴스 브리핑]

1.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관련 28 개 건설사의 공구분할·낙찰자 결정 및 들러리 담합 적발·제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355억 원 부과, 15개 법인 및 개인 7명 검찰 고발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관련 28 개 건설사의 공구분할·낙찰자 결정 및 들러리 담합 적발·제재

<http://www.kfcf.or.kr/network/read.jsp?board=32&page=1&serialnum=16183>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9 년도에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최저가낙찰제 13 개 공구 2 조 4,898 억 원, 대안 3 개 공구 및 차량기지 공사에서 1 조 1,082 억 원 등 총 합계 3 조 5,980 억 원에 달하는 입찰담합을 적발해 제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13 개 공구에서 공구분할 및 들러리 합의를 한 21 개 건설사[경남기업(주), 금호산업(주), 남광토건(주), 대림산업(주), (주)대우건설, 동부건설(주), 두산건설(주), 롯데건설(주), 삼부토건(주), 삼성물산(주), 삼성중공업(주), 삼환기업(주), 쌍용건설(주), 에스케이건설(주), 지에스건설(주), 케이씨씨건설(주), 코오롱글로벌(주), (주)한라건설, (주)한진중공업, 현대건설(주), 현대산업개발(주)]와 들러리 합의에 참여한 7 개 건설사 [계룡건설산업(주), 고려개발(주), 극동건설(주), 두산중공업(주), 한신공영(주), 포스코건설(주), 풍림산업(주)] 등 총 28 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479 억 원을 부과하고, 15 개 건설사 법인과 공구분할을 주도한 대림산업, 대우건설, 삼성물산, 에스케이건설, 지에스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빅 7'사의 담당 임원 7 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또한 대안방식으로 발주한 3 개 공구와 턴키방식으로 발주한 차량기지 공사에서 낙찰자·들러리 합의를 한 11 개사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과징금 876 억 원을 부과하고 9 개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빅 7 사는 2009 년도에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입찰 공고한 호남고속철도 노반 신설공사 13 개 공구 최저가낙찰제 공사에 대해 2009 년도 6 월경 13 개 전체 공구를 분할하여 낙찰 받기로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빅 7사와 14 개사 등 총 21 개사들은 1 차 입찰공고일(2009. 7. 31.) 이전에 전체 13 개 공구를 3 개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에 배정될 공구수를 정한 뒤 추첨을 통해 각 공구별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고(공구분할 합의), 낙찰예정자 이외의 입찰 참가자들은 들러리를 서 주기로 합의(들러리 합의)하고 실행했으며, 낙찰예정자 13 개사는 1 차 입찰일인 2009 년 9 월 22 일 이전에 설계금액 대비 76%대가 되도록 사전에 입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나머지 계룡건설산업, 고려개발, 극동건설, 두산중공업, 풀림산업, 포스코건설, 한신공영 등 7 개사는 위 공구분할에는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1 차 입찰일인 2009 년 9 월 22 일 이전에 빅 7 사 또는 낙찰예정자들의 들러리 요청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 건 최저가낙찰제 관련 입찰담합은, 전체 입찰 참가자 중 일부가 입찰담합에 가담하는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전형적인 담합 방법인 공중들기와 비교 할 때 입찰 참가자 모두가 입찰담합에 가담해 낙찰가격을 높임으로써 낙찰가격이 더 높아지고, 부적정공종 발생을 통한 가격경쟁이 되지 않아 낙찰률이 78.53%(예정가격 대비)로 다른 최저가공사 낙찰률(73.00%) 보다 높았다.

3 개 대안 공구 및 차량기지 공사 입찰담합에 있어서, 1-2 공구에서는 삼성물산(낙찰자, 2,742 억 원)과 에스케이건설이 PQ 제출 후인 2009 년 10 월경 상호간 투찰가격을 정하기로 ‘암묵적인 합의’를 하고 11 월 초경 투찰가격을 상호 협의 하에 정했으며, 2009 년 10 월 말 내지 11 월 초경 동 입찰에 참여한 경남기업으로 인해 투찰가격이 하락될 것을 우려하여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토록 경남기업과 이른 바 ‘들러리’ 합의를 하고, 합의한 투찰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해 담합을 실행했다.

2-3 공구에서는 현대건설(낙찰자, 3,316 억 원)이 경쟁사로 참여한 동부건설에 대해 실행률, 투찰률, 투찰방침 등을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등 들러리 입찰 참여를 제의했고, 이에 동부건설은 회사기밀에 속하는 실행률, 투찰방침 등을 알려줌으로써 현대건설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사실상 들러리를 서줬다.

4-2 공구에서는 지에스건설, 현대산업개발, 쌍용건설(낙찰자, 2,006 억 원)이 입찰 마감일인 2009 년 11 월 6 일 직전인 11 월 4.~5 일경 저가투찰을 막고 가격 출혈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피심인별 투찰률 및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고, 합의한

바대로 입찰에 참가했다.

차량기지에서는 대림산업(낙찰자, 3,018 억 원), 대우건설, 삼성물산이 2010년 3월 경 서울 광화문역 근처 카페에서 모임을 갖고 사다리타기로 추첨을 하여 각 사가 투찰해야 할 투찰률을 합의하고, 이 후 각사는 입찰일인 2010년 4월 2일 사다리 타기로 뽑은 투찰률대로 투찰을 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경쟁사 직원 들의 참관 하에 투찰을 했다.

이에 공정위는 공구분할 및 입찰담합에 참가한 건설사들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 19조 제 1항 제 3호(공구분할) 및 제 8호(입찰담합)를 적용, 향후 금지명령 및 총 4,35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최저가 13개 공구 입찰담합과 관련해 15개사 법인(금호산업, 동부건설, 두산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롯데건설, 삼성물산, 삼환기업, 쌍용건설, 에스케이건설, 지에스건설, 케이씨씨건설, 한진중공업,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를 검찰에 고발하고, 빅 7사 담당임원 7명도 함께 고발했다.

대안 3개 공구 및 차량기지 입찰담합과 관련해서도 9개사 법인[대림산업, 대우건설, 삼성물산(1-2 공구, 차량기지 각각 고발), 쌍용건설, 에스케이건설, 지에스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대규모 국책사업인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업자 들이 사전에 공구를 분할하고 개별 공구별로 낙찰자와 들러리를 정하고 실행한 행위를 적발하고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담합관행을 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소개 하고, 향후에도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고 국가 재정에 피해를 주는 공공 입찰 담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위로 이동>
